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 조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 미비점 보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의 2%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2.5%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편의 제공(안 제14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2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4조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을 기존 2%에서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안임.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